

2014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 자료집

주 관

-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최

-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유성장래인자립생활센터
-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전광역시

○ 협 력

-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이채식 교수
-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미나 개요

- ◎ : 한일세미나 -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현황과 과제
- ◎ 장소 : 대전복지재단 9층 대강당
- ◎ 날짜 및 시간 : 2014. 11. 04 (화) ~ 2014. 11. 06 (목)
- ◎ 주관 :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주최 :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성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좌장 :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
- ◎ 발제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리얼 라이즈 이사장 井孝夫(미즈이 타카오)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민영 소장

□ 주요일정

일정	시간	장소	대상	비고
한일간담회	4일 17:00 ~	미정	국장급이상	
한일세미나	5일 14:00 ~ 17:00	대전복지재단	약 100명	
저녁만찬	5일 18:00 ~	미정	소장급	
서울투어	6일 10:00 ~	서울일대	일본외빈 포함 10명	

□ 세미나 진행순서

간	순서 및 내용	발표자
13:30 ~ 14:00	접 수	
14:00 ~ 14:10	회 식	
14:10 ~ 15:10	제1주제 발표 “일본의 장애인 복지현황과 자립생활센터의 활동”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리얼 라이즈 이사장 三井孝夫(미즈이 타카오) ※ 통역 : 교수(우송정보대학 겸임교수)
15:10 ~ 15:20	휴 식	
15:20 ~ 15:40	제2주제 발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 현황과 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민영 소장
15:40 ~ 16:00	질의 응답	
16:00	폐 회	

차

1. (제1주제 발제) 일본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자립생활센터 활동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리얼라이즈 미츠이 다카오 1P

 2. (제2주제 발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현황과 자립생활센터
: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민영 소장 8P

 3. (자료) 장애인시설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적 시점
: 아이치 쇼쿠도쿠대학 교수 타니구치 아키히로 (번역 박세용) 18P
-
- 부록 I-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번역본) 30P
-
- 부록 II-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138P

일본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자립생활센터의 활동

(제1주제 발제 : 번역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리얼 라이즈
이사장 三井孝夫(미츠이 타카오)

I. 현재의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종합지원법 2013 . 4. 1시행

1. 현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법률 명칭

-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통칭 : 장애인 종합지원법)“

2. 장애인의 범위(장애아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대응.)

- 신체, 지적, 정신과에 난치병 등이 추가되었다.

3. 장애 지원 구분

- “장애지원구분“이란 장애의 다양한 특성 기타 심신 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4. 계획상담 지원사업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사업소가 서비스 이용 계획서를 작성한다. 계획서에 필요한 지원을 기재하고 계획을 참고로 시읍면이 서비스 지급량을 결정한다.

5. 서비스의 종류

- 신변처리(목욕 배설 등 ADL의 지원)
- 가사 원조(조리, 청소, 빨래 등의 가사)
- 이동 지원(사회 참여, 여가 활동 등의 외출 시 지원)
- 중증장애인 방문 지원(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시간 지원)

- 케어 홈(장애인이 적은 인원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의 공동생활을 위한 지원 주거)
- 생활 지원(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장소 제공)
- 취업 이행 지원(일반 취업을 위해 훈련)
- 취업 계속 지원 A형(고용형 복지적 취로)
- 취업 계속 지원 B형(비 고용형 복지적 취로)
- 시설 입소 지원(수십명의 공동생활을 위한 시설 내에서 지원)
- 커뮤니케이션(수화 통역, 입원 시의 커뮤니케이션 보장)
- 보조 장구·의료비 지원(휠체어나 자백, 의료비 지원)
- 일상생활 용구 지원사업(목욕용 의자, 리프트 등)

□ 과제

- 활동지원 보장 문제 : 장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량 부족 문제
- 이동의 제한 문제 : 이용 목적에 제한이 있다.(도박, 술집, 여행, 수영장, 시설 입소자 등)
- 상담 지원 사업소 수가 부족한 문제

- 지역 간 격차 문제 : 대도시 이외의 권리의식 부족, 사회자원 부족 등이 있다. 자립 생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빈약.
- 시설에서 지역으로 이행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 : 지역 기반이 없고 새로운 입소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행이 진행되지 않는다.
- 정신병원에서의 지역으로 이행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 : 정신 장애인의 기반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적고 때문에 지역 이행이 진행되지 않는다. 또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있어 새로운 자원을 만들기 어렵다. 일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일반 취업해도 지원이 없어 계속할 수 없다.

II.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대해

1. 자립생활센터의 이념과 서비스

- 장애인 자신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활기차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을 배출해 내고,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를 바꿔 간다.
- 당사자 주체의 운영 : 대표, 사무국장이 장애인 ※2 의사결정기관의 과반수는 장애인
- 장애유형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권리옹호와 정보제공을 기본으로 피어·카운셀링, LLP, 활동보조인 파견, 주택 서비스 속에서 두개 이상의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다.

2. 자립생활운동의 자립이란

- 직업자립과 ADL자립이 아닌, 자기선택,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 아무리 중증장애이라도 필요한 배려와 지원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존재이다. 또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자기선택, 자기결정이 보장되고 한 인간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자립.

3. 자립생활센터의 당사자 주도의 필요성

-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롤 모델로서의 권한부여는 장애인이 나눌 수 없는 효과이다.

4. 운영을 위한 재원

- 재원은 국가의 보조금이 없어 활동보조 파견이나 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소로서의 수익을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에 충당하고 있다.(1500만엔/년 보조를 받는 CIL도 있다.)

<리얼 라이즈의 경우>

- 사업 수입 약 1억엔(활동지원사업 8500만엔, 생활지원 1500만엔)
- 연간 사업비 약 1억엔
- 직원 20명, 아르바이트 약 50명.
- 직원 연봉 300만엔~500만엔
- 아르바이트 시급 1035엔

日本の障害者福祉の現状と自立生活センターの活動

(발제 : 원본)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リアライズ

理事長 三井孝夫

I. 現在の障害福祉制度…障害者総合支援法 2013 . 4. 1施行

1. 現在の障害福祉サービスにおける法律の名称

- 「障害者自立支援法」を「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通称：障害者総合支援法）」

2. 障害者の範囲（障害児の範囲も同様に対応。）

- 身体、知的、精神に加え、難病等が加えられた。

3. 障害支援区分

- 「障害支援区分」とは、障害の多様な特性その他の心身の状態に応じて必要とされる標準的な支援の度合いを示すものである。

4. 計画相談支援事業

- サービス利用を希望する障害者を対象に、相談支援事業所がサービス利用計画書を作成する。計画書に必要な支援を記載し、計画を参考に市町村がサービスの支給量を決定する。

5. サービスの種類

- ・身体介助（入浴、排せつなどADLの介助）
- ・家事援助（調理、掃除、洗濯などの家事）
- ・移動支援（社会参加、余暇活動などの外出時における介助）
- ・重度訪問介護（重度障害者対象の長時間介護）
- ・ケアホーム（障害者が少人数で暮らす住居型の共同生活のための支援つき住

居)

- ・生活介護（重度障害者対象の日中活動の場の提供）
- ・就労移行支援（一般就労にむけての訓練）
- ・就労継続支援A型（雇用の福祉的就労）
- ・就労継続支援B型（非雇用の福祉的就労）
- ・施設入所支援（数十人での共同生活のための施設内での支援）
- ・コミュニケーション支援（手話通訳、入院時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保障）
- ・補装具・医療費の助成（車いすや白杖、医療費の助成）
- ・日常生活用具給付事業（入浴用の椅子、リフトなど）

□ 課題

- ・介助保障の問題…長時間介助が必要な人への支給量不足の問題
- ・移動の制限の問題…利用の目的に制限がある。（ギャンブル、居酒屋、旅行、プール、施設入所者など）
- ・相談支援事業所の数が不足している問題
- ・地域間格差の問題…大都市部以外の権利意識の不足、社会資源の不足などがある。自立生活運動が起きていない地域は貧弱。
- ・施設からの地域移行が進まない問題…地域基盤がなく、新たな入所者があるため地域移行が進まない。
- ・精神病院からの地域移行が進まない問題…精神障害者の基盤は他の障害者に比べて少なく、より地域移行が進まない。また、施設コンフリクト（住民の反対）があり、新たな資源を作り難い。
- ・一般就労へつながるケースが少ない、一般就労しても支援がないため、継続できない。

Ⅱ. 自立生活センターの運営について

1. 自立生活センターの理念とサービス

- ・ - 障害者自身が障害者の自立を支援し、施設ではなく地域で生き生きと自分らしく自立生活を送る障害者を生み出し、権利の主体として社会を変えていく。
- ・ 当事者主体の運営…代表、事務局長が障害者 ※²意思決定機関の過半数は

障害者

- ・ 障害種別を越えたサービス提供をおこなう
- ・ 権利擁護と情報提供を基本とし、ピア・カウンセリング、ILP、介助派遣、住宅サービスの中から二つ以上のサービスを不特定多数に提供していること。

2. 自立生活運動における自立とは

- 職業自立やADL自立ではなく、自己選択、自己決定による自立。どんなに障害が重くても必要な配慮や援助があれば自立できる存在である。また、そのような環境が整い、自己選択、自己決定が保障され、一人の人間として地域社会で主体的に生きることが自立。

3. 自立生活センターにおける当事者主導の必要性

- 障害者だからこそ分かち合える感情や経験をもとにした情報提供、ロールモデルとしてのエンパワメントは、障害者でないと生まれない効果である。

4. 運営のための財源

- 財源は国からの補助はなく、介助派遣や生活介護サービスの事業所としての収益を、自立生活センターの活動に充てている。(1500万円/年の補助のあるCILもある。)

<リアライズの場合>

- 事業収入約1億円(介護事業8500万円、生活介護1500万円)
- 年間事業費 約1億円
- 職員20名、アルバイト約50名。
- 職員年収300万円~500万円
- アルバイト時給1035円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현황과 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민영 소장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시정비전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라는 구호 아래 출범 하였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 결과’ 광역시 중에 2011년 ~ 2014년 4년 연속 1위를 하였고, 2007년 ~ 2009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장애인복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사이며 축하를 할 노릇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다.

대전복지재단에서 발행한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5개 영역별 지표에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대부분 우수하지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중·하위권을 의미하는 개선 수준이며 자립지원 영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이 80,775원으로 전국 평균인 135,729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도 104,601원으로 전국 평균 170,796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지향하는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상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복지예산은 시설 중심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또한 장애인복지 수준은 1위라고는 하지만 지역의 재가 장애인 보다는 시설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 예산 중심으로 본론을 논하고자한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구의 현황

2014년 9월 현재 대전광역시 인구는 1,535,000명이고, 2013년 12월 현재 장애인구는 71,647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로 36,409명(51%)이며, 뇌병변장애(7,664명), 청각장애(7,396명), 시각장애(7,203명), 지적장애(5,204명), 정신장애(2,849)명, 신장장애(2,001명), 자폐성장애(731명), 언어장애(478명), 호흡기장애(379명), 장루·요루장애(374명), 간장애(255명), 간질장애(252명), 심장장애(169명), 안면장애(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은 <표 1> 과 같다.

<표 1>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계	구분	남자	여자	계
계	41,819	29,622	71,441				
지체	2,1466	14,943	36,409	신장	1,148	853	2,001
시각	4,301	2,902	7,203	심장	102	67	169
청각	4,088	3,308	7,396	호흡기	284	95	379
언어	341	137	478	간	187	68	255
지적	3,108	2,096	5,204	안면	55	22	77
뇌병변	4,279	3,385	7,664	장루·요루	237	137	374
자폐성	621	110	731	간질	139	113	252
정신	1,463	1,386	2,849				

* 출처 : 대전시청 <http://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20> 참조

장애인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격은 1급 또는 2급 정도의 중증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장애 급수 분포는 <표 2> 와 같다.

〈표 2〉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장애 급수

(단위: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계	71,441	6,253	9,573	12,137	9,949	14,749	18,780
	남성	41,819	3,722	5,479	7,386	5,243	7,931	12,058
	여성	29,622	2,531	4,094	4,751	4,706	6,818	6,722

* 출처 : 대전시청 <http://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20> 참조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은 2013년 2월 말 현재 총 120개소이며, 이 가운데 거주시설 57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6개소, 직업재활시설 14개소, 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의료재활시설 2개소이다. 이는 2006년 59개소에서 2013년 120개소로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시설은 유형별 거주시설 18개소, 단기거주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30개소이다. 유형별 거주시설은 서구가 10개소로 가장 많고, 단기거주시설은 자치구별로 1-3개소가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동구가 12개소로 가장 많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복지관 6개소, 주간보호 30개소, 체육시설 3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5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이다. 복지관은 유성구가 2개소이고, 중구와 동구, 대덕구가 각각 1개 기관씩 운영 중이며, 서구는 2013년 2월에 행복한우리복지관 ·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개원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간보호센터는 각 자치구별로 5-8개소였으며, 체육시설은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 1개소로 동구와 중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름센터는 중구에 1개소가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자치구별로 각 1개소가 있으며, 점자도서관은 동구 1개소로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은 서구가 5개소로 가장 많고, 대덕구가 4개소, 그 밖의 다른 자치구는 1-2개소를 두고 있다. 생산품 판매시설은 유성구에만 1개소, 의료재활시설도 유성구에만 2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3년 대전광역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총계		120	28	18	27	21	26
거주시설	소계	57	15	9	13	7	13
	유형별거주 등	18	2	1	10	1	4
	단기거주	9	1	2	1	2	3
	공동생활	30	12	6	2	4	6
지역사회재활시설	소계	46	11	8	9	9	9
	복지관	6	1	1	1	2	1
	주간보호	30	8	5	6	5	6
	체육시설	3	-	-	1	1	1
	심부름센터	1	-	1	-	-	-
	수화통역센터	5	1	1	1	1	1
점자도서관	1	1	-	-	-	-	
직업재활시설		14	2	1	5	2	4
생산품 판매시설		1	-	-	-	1	-
의료재활시설		2	-	-	-	2	-

* 출처 : 대전시청 장애인복지과 참조

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88백만원), 재무활동(5억 93백만원)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은 1,028억 1백만원이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단체지원이 4억 60백만원(0.4%),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 493억 10백만원(48.0%), 재가장애인복지증진은 309억 73백만원(30.1%),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220억 56백만원(21.5%)이다.

장애인복지증진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단체지원 4억 60백만원 중에서 장애인단체사업지원은 3억 19백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 1억 41백만원이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93억10백만원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이 360억 7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에 6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32억 89백만원, 장애인시설 민간위탁 29억 73백만원 순으로 많았다.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309억 73백만원 중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207억 7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 가족지원사업은 39억 74백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은 31억 84백만원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20억 56백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기초)지원이 148억 3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25억 85백만원, 장애수당(기초) 지원 24억 1백만원 순으로 많았다.

〈표 4〉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안 항목별 내역

항목		예산(백만원)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319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141
	소 계	460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8,947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6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4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5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10,69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59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124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2,973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자 위문	17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자 위문	144
	장애인생활용품 판매시설 지원	224

2014 대자연 한일세미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152
	일자리 창출 자율사업(장애인복지과)	85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6,000
	시립체육재활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2
	무지개복지공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48
	소 계	49,306
재가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정책 운영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7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개선(직접)	328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개선(지원)	209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직접)	23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지원)	309
	성폭력 장애인 상담소 운영	162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9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5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20,776
	<u>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u>	3,184
	장애인복지정책사업 추진(직접)	<u>310</u>
	장애인복지정책사업 추진(지원)	908
	장애아 가족지원사업	451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3,974
	소 계	200
	소 계	30,969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기초) 지원	2,401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2,585
	중증장애인(기초) 지원	14,832
	장애인의료비 지원	2,053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58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24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00
	소 계	22,063

* 출처 : 대전시청 장애인복지과 참조

〈표 4〉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93억 10백만원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는 393억 67백만원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309억 73백만원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7억 76백만원을 빼면 101억 97백만원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은 고작 3억 10백만원이다. 〈표 5〉의 자립생활 예산비교가 너무 단순화 시킨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만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2013년 대전광역시 시설과 자립생활 예산 비교

구분	장애인생활·직업재활·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	393억 67백만원	3억 10백만원

고무적인 소식은 2014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한 미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에 시비로 35백만원(1억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표 6〉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많이 미흡하다.

〈표 6〉 2014년 전국 자립생활센터 정부·지자체 지원현황

(단위: 천원)

	지역	2014년 정부보조금 (국비40% +지방비60%)	지자체 보조금 (지방비 100%)
			지원 현황
1		7개소(6개소 시비 30,000 추가 지원)	지자체지원 27개소 (50,000 2개소) 96,000×25개소
2	인천	4개소	60,000×3개소
3	경기	5개소	95,000×24개소 차등지원
4	대전	3개소(한밭, 보문, 대덕)	35,000×3개소(추경 포함) (서구, 유성, 대전(중구))
5	광주	4개소	70,000×2개소 60,000×2개소 50,000×1개소
6	대구	5개소	55,000×2개소
7	울산	1개소	60,000×1개소
8	부산	6개소	75,000×2개소 50,000×2개소
9	강원	3개소	-
10	충북	3개소	도비 70,000×5개소
11	충남	2개소	150,000×2개소
12	경북	2개소	150,000×2개소 (도비30%,시비70%)
13	경남	3개소	120,000×8개소 × 도비(48,000) 시비(72,000) × 매년 1개소씩 지원확대 약속
14	전북	2개소	-
15	전남	3개소	-
16	제주	2개소	미지원센터 없음
합 계		56개소	

끝으로 제안을 하면 대전광역시 는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장애인복지수범도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료)로 이미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또한 2009년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최소한의 법적 지원 근거는 가지고 있다. 이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걸맞게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수준을 격상 시켜야 할 때이다.

장애인시설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적 시점

아이치(愛知)슈쿠도쿠(淑徳)대학 교수

타니구치 아키히로(谷口 明広)

번역 박세용

1. 자기결정

(1)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서비스를 할 때에도 「요구우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자기결정이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타인이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지난 생활 패턴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기 때부터 자기결정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는 라이프 히스토리를 갖는 사람이 많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기결정이라 함은, 장애인 각 개인에 대하여,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결정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변사람이 부정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결정에 대하여, 가족을 시작으로 주위사람들이, 그 의견을 그 순간에 부정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준다고 하는 안심감이 자기결정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② 작은 목표달성을 반복하여 맛봄으로서, 장애인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그 무엇에 대해서도 목표달성을 별로 체험

하지 못한 채 성장해 왔습니다. 유아기 생활에서부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았고, 자신이 달성한 일인지, 서비스제공자가 달성한 일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한 채, 생활해 온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을 반복하여 맞봄으로서,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③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에 의한 토론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안심감을 갖게 한다.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의 본능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특히 서비스제공자와의 의견차이), 상대에게 나쁜 감정을 안겨줌으로 인해서, 마음 편한 서비스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서 「예스 맨」이라 불리는 캐릭터를 연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격으로 됩니다.

④ 잡다한 욕구를 정리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당면한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구체적 사고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추구해 감으로서, 자기결정에 대한 의욕이 일어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신뢰도 성장해 갑니다.

⑤ 과거의 경험을 소재로 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자기결정을 해 나갈 때, 무엇을 선택할 것 인가를 생각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장래 모습을 가상하는(시뮬레이션)」 일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고는, 장애인에게도 필요 불가결한 일이며, 유아기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실감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만, 성인기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제공(informed consent)」을 자세히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이 5가지 요소를 정리해 감으로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능력을 증대시키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2) 욕구(Needs)구조와 탐구 프로세스

「자기결정」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추구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래의 욕구(Needs)파악은, 이용자가 갖고 있는 욕구를 광범위하게 정리하여, 각 개인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각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충족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이용자가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실현 욕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탐구 프로세스가 필요가 있다.

① demand(요구)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솔직한 요구를 정리하는 단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황당해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표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demand)”는, 욕구(Needs)의 가장 초기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욕구(Needs)추출은, 이 단계에서 시작한다고 인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② Felt Need(필요성)구성단계(이용자의 입에서 나온 마음의 외침 “요구(demand)”를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욕구(Needs)를 재확인하는 단계)

이용자 입에서 나온 구체화 되지 않은 요구(demand)는, 서비스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실상이 형성되어 간다. 이 작업은,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구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했는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Felt Need(필요성)」로 발전시킵니다. 이용자의 요구(demand)를 발전시킨 “Felt Need(필요성)”는 서비스전문가가 「실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③ Normative Need(기준을 정한 요구)제시단계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실현 불가능이라고 판단될 때, 원조자가 지원자의 입장이 되어, 욕구(Needs)를 제시해 가는 단계)

이 단계는, 서비스전문가가 이용자에게서 표출된 “Felt Need(필요성)”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각종 의견(의학적, 경제적, 정신적, 인적 등의 요소)을 듣고,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같이 이용자가 생각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하에, “Normative Need(기준을 정한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④ Real Need(진정한 욕구)고찰 혼돈단계 (Felt Need(필요성)와 Normative Need(기준을 정한 요구)가 양자의 내외에 혼란 상태로 표출되고 새로운 욕구로 변화하려고 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제시한 “Normative Need(기준을 정한 요구)”가 너무 강하지 않게 하여야한다. 반대로 “Felt Need(필요성)” 너무 우선시킴으로서 실현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의 욕구(Needs)에 Real Need(진정한 욕구)가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시간을 갖게 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Real Need(진정한 욕구)표출 결정단계(애벌레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듯이 혼돈상태를 거친 욕구(Needs)가 Real Need(진정한 욕구)로 확립되는 단계)

이용자와 전문가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Real Need(진정한 욕구)를 표출해 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쌍방의 욕구(Needs)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닌, 중요한 요소는 남겨둘)를 표출해 가는 단Real Need(진정한 욕구)는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욕구(Needs)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기가 결정한 사안이 현실로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는 일이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이고, 한층 더 자기결정능력 증대로 연결됩니다.

2. Care Work 속의 Empowerment(권한부여)

(1) Empowerment(권한부여)의 개념

「Empowerment(권한부여)」란, 17세기 법률용어로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말합니다만, 2차세계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민권운동과 여권신장운동 등을 계기로 하여, 그 사고는 사회복지, 발전도상국개발, 의료,

간호, 교육,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Empowerment(권한부여)를 정의하자면, 「같은 생활환경에 있는 일반상황과 비교하여 Powerless(무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정치·경제·사회적 면 등에 있어서 일반수준을 획득하려고 할 때,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향상·사회 환경의 개선·개인과 사회환경과의 조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Powerless(무력)한 상황을 개선해 가는 모든 과정¹⁾」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본래 힘(power)이 없는 사람이나 빼앗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반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연대의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힘(power)을 붙여가는 모든 과정을 Empowerment(권한부여)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향과 상반된 「Empowerment(권한부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개호관계, 교육현장에 있어서 Empowerment(권한부여)의 이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계종사자(특히 개호관계자)를 확보해야 하기에, 대학과 전문대에서 사회복지 관련학부가 신설되고, 전문학교와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내용은, 장애인들을 “자기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복지서비스 곤궁자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복지서비스 곤궁자」로 만든 원인은, 장애로 인하여 문제 해결능력의 저하이고, 장애가 없는 것이 높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를 먹음」과 「장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라는 사실」조차도 “악(惡)”이나 “약(弱)”이라는 이미지로 규정하여, 무의식 속의 이해로서 교육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호서비스종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보다도 정확하고 깊이 있

1) 谷口明広「エンパワメントの歴史的変遷と定義」

谷口・小田島・武田・土屋 『障害者のエンパワメントの視点と生活モデルに基づく具体的な地域生活支援技術に

する研究』報告書

厚生省労働科学研究 平成16年度 厚生省労働科学障害保健福祉総合研究事業 23ページ 2005

게 Empowerment(권한부여)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Rehabilitation 개념에 있어 「클라이언트」로 규정짓지 말고, 자립생활개념으로 「생활인」으로 규정하는 일이 Empowerment(권한부여)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 되는 것도 많습디다만, 최종적으로는 훌륭한 인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몸으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고, 클라이언트가 「받는 측」이라는 구도를 기본으로 하는 종래의 생각으로서는 Empowerment(권한부여)라는 개념조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주체」의 지원체제를 재인식함으로서 Empowerment(권한부여)의 이해가 심화될 것입니다.

(3) 장애인관련시설에 있어서 Empowerment의 이해

Empowerment(권한부여)를 지지하는 원조자 중에서, 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장 깊이 이해하기 바라는 사람이,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직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라는 곳에서 분리된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매일 실행되고 있는 행위가 예를 들어 「비인도적 수법」이라 해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시설에서 서비스종사자는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가 됩니다.

2000년도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에 의해, 시설관계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조치비제도가 노인복지분야에서 붕괴되고, 2003년도에는 장애복지분야에 「지원비제도」라는 계약제도가 시작되었고, 2006년도에는 현재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이행한 의미는 「주어지던 복지」에서 「선택하여 이용하는 복지」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복지관련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Empowerment(권한부여)를 구현한 하나의 형태이고, 일반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즉석카레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즉, 이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공적 서비스의 곤궁자라는 인식에서 각종 서비스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 요약하자면 시설에서 서비스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시설에 맡겨져 있다」라는 보호적 의식을 갖고는 대응할 수 없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특히 요서비스제공자)의 Empowerment(권한부여)를 지지하려는 행동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상과는 역발상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 시설노동자의 의식개혁과 시스템개혁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필수조건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장소이기에, Empowerment(권한부여)를 지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4) Strength(주목해야할 장점) model에 의한 서비스지원의 사고방식

2006년에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지역이행과 취로지원을 커다란 목표로 정하고, 장애인 Care Management의 제도화에 따르는 상담지원사업 강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60년간에 걸친 시설체계를 수정하여 「일과활동 장소」와 「거주 장소」라고 하는 사고방식 중에서, 『서비스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개별지원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였다. 지역생활지원에 있어서 상담지원사업의 상담원에게도, 시설 등의 사업소에 있어서 서비스관리책임자에게도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운용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상에 있어서는 상담지원사업소에 작성되어 있는 「개별지원계획」은,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이용계획표를 메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고, 시설 등에서 작성되어 있는 계획은, 종래의 Rehabilitation계획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들로서는, 장애인 Care Management의 도입부분에서 사용하는 평가(Assessment)표와 장애정도구분인정에 사용되는 106항목에 이르는 「조사표」는, 상담원과 서비스관리책임자가 장애인이용자의 「할 수 없다」 「문제가 된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계획을 작성해 버리는 점이, 근본적 잘못의 원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trength(주목해야할 장점) model에서는, 장애인이용자의 약한 부분과 문제가 있는 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Strength(주목해야할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운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적으로 뒷정리를 못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를 주지 않으면 뒷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걸면 뒷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미약한 부분 문제점을 개선하여도, 마이너스를 0(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애써 노력한 결과이고, 플러스(사회에 통용된다)영역까지 상승시키는 일은 매우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으로 Strength(장점)를 키우는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플러스 면을 강조함으로써 마이너스 면이 커버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서비스는 마이너스 면을 보완하고, 플러스 면을 계속하여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실현됨으로서 장애인이용자의 Empowerment(권한부여)가 실현됩니다.

3. 권리옹호

(1) 서비스과정에 있어서 권리옹호의 중요성

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인 부담경감이라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 행동의 총체이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즉, 「서비스」란, 장애인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동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비스」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규정되고, 장애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지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서비스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일방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비스관계」가 되면 양자의 동의에 의해 구축됩니다.

서비스관계란, 장애인과 서비스제공자가 Private(개인적) 환경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제3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이용자본인이 고발하지 않는 한,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비스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옹호」의식을 높게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애인 Care Management에 의한 인권옹호

시설형 복지에서 재가복지로 라는 흐름을 시사한 장애인 Care Management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중증신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용자가 시설에서 생활 할 때보다도 「인권침해」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옹호에 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적서비스보험제도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Care Management에서는, 서비스지원전문가가 소속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케어 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며, 서비스보험료의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적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Care Management에 있어서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사회경험이 적은 장애인들은 보다 막대한 인권침해 속에 놓여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자의 욕구를 실현시켜 가듯, 이용인의 입장을 고려한 「개별지원계획」이 작성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능적으로 활용한 장애인 Care Management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라는 사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과 고충처리기구

인권침해에 조우가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이용자에게 「생활협력자」를 파견함으로써 원활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용자 수도 증가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명확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장애인 권리옹호에 뼈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생활서비스사업 등의 재가복지서비스현장에서, 이미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 기관으로서 「고충해결기구」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충해결은,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만 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연 사항을 고려하자면, 지역사회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로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에서 볼 수 있는 한곳에 집중된 서비스기관은, 무의식중에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평의<評議>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인권옹호를 추진하는 지킴이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 옴부즈맨(ombudsman)과 옴부즈즈·퍼슨((ombuds' s·person)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설치하여, 인권옹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관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서비스제공자 측에 유리한 사람을 선발하고 「예스 맨」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처럼 「옴부즈맨이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의식은, 우리의 감각 속에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고, 「신용할 수 없는 기관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4) 성년후견제도는 이용자의 인권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인지증(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의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용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또는 이용자의 법률행위를 도와 줄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도우미법, 영국의 지속적 대리권수여법을 참고로 2000년4월에 기존의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법정후견」과 이용자의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에 후보자와 계약을 해 두는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지증(치매)고령자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견인을 지명함으로써 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음으로, 잘 생각하고서 이용하기 바랍니다.

(5) 인권옹호의 밑바탕은 「교육」에 있습니다.

미국인은, 일본인과 비교할 때 인권의식이 강하다고 말합니다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 의식은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서비스이용자로서의 Empowerment(권한부여)”를 성장시켜가는 일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서비스이용자의 Empowerment(권한부여)지지하는 원조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

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릴 적부터의 인권교육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제공자 또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정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4. 서비스제공책임제도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치료목표나 재활계획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은 항상 이용자의 노력과 능력부족으로만 치부되어 왔고, 제공자의 서비스제공책임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 「서비스제공 책임제도」란,

- 이용자의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맞춤형서비스제공을 중시한다.
- 목표달성을 위해, 확실하고 면밀한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고, 단계 별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해 가는 원조방법이다.
-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내용과 목표설정, 목표달성에 대한 분석과 책임을 철저히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업무결과, 즉

- 개별지원계획작성 등,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서비스제공 구조를 만들었는가?
- 정확한 개별지원계획작성과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팀 어프로치를 적절하게 지원했는가?
- 가족이 협력자가 되도록 지원했는가?
- 지역관계기관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부록-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일명: 장애인종합지원법)

1. 장애인종합지원법

(헤이세이 17년(2005) 11월 7일 법률 제 123호)

(헤이세이 24년(2012) 6월 20일 제정 6월 27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시행)

제 1 장 총칙(제1조~제5조)

제 2 장 자립지원급여

제 1 절 통칙(제6조~제14조)

제 2 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
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 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 1 관 시.정.촌 심사회(제15조~제18조)

제 2 관 지급결정 등(제19조~제27조)

제 3 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제28조~제31조)

제 4 관 특정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제32
조~제35조)

제 5 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및 지정
상담지원사업자(제36조~제51조)

제 6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제51조의 4)

제 3 절 지역상담지원 급여,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 1 관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의
5~제51조의 15)

제 2 관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

의 16~제51조의 18)

제 3 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제51조
의 19~제51조의 30)

제 4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제51조의 33)

제 4 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제52조~제75조)

제 5 절 보장구비의 지급(제76조)

제 6 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 2)

제 3 장 지역생활지원사업(제77조~제78조)

제 4 장 사업 및 시설(제79조~제86조)

제 5 장 장애인복지계획(제87조~제91조)

제 6 장 비용(제92조~제96조)

제 7 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인종합지원법 관계 업무(제96의
2~96조의 4)

제 8 장 심사청구(제97조~제105조)

제 9 장 잡칙(제106조~제108조)

제 10 장 별칙(제109조~제115조)

부칙

제 1 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장애자기본법(쇼와 45년(1970) 법률 제 84호)의 기본적인 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자 복지법(쇼와 24년(1949) 법률 제 283호), 지적장애자복지법(쇼와 35년 법률 제 37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쇼와 25년 법률 제 123호), 아동복지법(쇼와 22년 법률 제 164호) 기타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 2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소중한 개인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아래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로 인해 격리되는 일없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친숙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확보되며 지역사회에서 타인과의 공생을 방해하거나 또한 장애자 및 장애아동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상에서 장벽이 되는 사회 속의 사물, 습관, 관념 기타 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책무)

제2조 기초지자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동문)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一. 장애자 스스로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애자 혹은 장애아동(이하[장애자 등]이라 한다)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구역의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재활(장애자의 고용촉진 등에 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 123호) 제2조 제 7호에 규정되어 있는 활을 가리킨다. 이하는 같다)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모색하며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二.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공하며,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할 것.

三.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 및 조정을 행할 것.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

2. 광역지자체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一.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할 것.

二. 기초지자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필요한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三.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四.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3. 국가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자립지원급여, 지역생활 지원사업 기타 이 법률에 기초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책무)

제3조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 등이 그 능력 및 적성에 맞게 자립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정의)

제4조 이 법률상의 [장애인]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발달 장애인 지원법 (헤이세이 16년(2004년) 법률 제 167호) 제2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발달 장애자를 포함하며, 지적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자를 제한다. 이하 [정신장애인]라 한다)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장애 정도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정도의 자로 18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

2. 이 법률 상 [장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을 가리킨다.

3. 이 법률 상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를 가리킨다.

4. 이 법률 상 [장애지원 구분]이란 장애인 등의 장애의 다양한 특성, 기타 심신상태에 대해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구분을 가리킨다.

제5조 이 법률 상 [장애인복지 서비스]란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원호, 행동원호, 요양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공동생활개호, 시설입소지원,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및 공동생활 지원을 가리키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이란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 지원시설,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지적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のぞみの園)법 (헤이세이 14년(2002) 법률 제 167호) 제11 조 제 1호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이 설치하는 시설(이하 [희망원(のぞみの園)]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입소지원 및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하동문)를 제한다)를 실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2. 이 법률 상 [재택개호]란 장애자 등에 대해 재택입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 상 [중증방문개호]란 중증의 지체부자유자 그 외 장애자 상시 개호가 필요한 장애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재택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편의 및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상 [동행 원호]란, 시각 장애로, 이동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 등으로, 외출 시에 해당 장애자 등에 동행하여,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동의 원호(援護)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률 상 [행동지원]란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행동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 등으로 상시개호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장애자 등이 행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원호,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 상 [요양개호]란 의료가 필요한 장애자로 상시개호가 필요함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자에 대해 주로 주간에 병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기능훈련, 요양 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의 개호 및 일상생활 상의 지원 제공을 말하며, [요양개호의료]란 요양 개호 중 의료에 관한 것을 말한다.

7. 이 법률 상 [생활개호]란 상시개호가 필요함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자에 대해 주로 주간에 장애자 지원시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입욕, 배설 또는 식사의 개호,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기회제공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이 법률 상 [단기입소]란 재택으로 개호를 실시하는 자의 질병 기타 이유로 장애자 지원시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의 단기입소가 필요한 장애자 등을 해당시설에 단기 입소시켜 입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이 법률 상 [중증장애자 포괄지원]이란, 상시개호가 필요한 장애자 중,

그 개호가 필요한 정도가 현저히 높은 자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택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 법률 상 [시설입소지원]이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자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 법률 상 [장애자 지원시설]이란 장애자에 대해 시설입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입소지원 이외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희망원 및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한다)을 말한다.

12. 이 법률 상 [자립훈련]이란 장애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 법률 상 [취업이행지원]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자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생산 활동 기타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 이 법률 상 [취업계속지원]이란 통상적인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자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 활동 기타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 법률 상 [공동생활지원]이란 지역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장애자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개호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 법률상 [상담지원]이란 기본상담지원, 지역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 지원을 말하며, [지역 상담지원]이란 지역 이행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말하며, [계획 상담지원]이란 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말하며, [일반 상담지원 사업]이란 기본 상담지원 및 지역 상담지원중 어느 쪽이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하며, [특정 상담지원 사업]이란 기본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의 어느 쪽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이 법률 상 [기본 상담지원]이란 지역의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제

반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등 장애아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의 개호를 하는 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하며, 아울러 이들과 기초지자체 및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등과의 연락 조정(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지원을 제외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 법률 상 [지역 이행 지원]이란 장애인 지원 시설, 희망원 혹은 제 1항 혹은 제 6항의 후생노동 성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정신과병원(정신과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전용 병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89 조 제 4항에 대해 같다)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 장애인 기타 지역으로 생활을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대해 주거의 확보 기타 지역에서의 생활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상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 법률 상 [지역 정착 지원]이란 거택에서 단신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해당 장애자와 상시의 연락 체제를 확보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어난 긴급한 사태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상담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이 법률 상 [서비스 이용 지원]이란 제 20조 제1항 혹은 제24조 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인 등 또는 제51조의 6 제1항 혹은 제51조의 9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자의 심신상태, 주변 환경, 해당 장애인 등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9조 제 1항 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다음 항에서 [지급결정]이라 한다), 제2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의 변경결정(다음 항에서 [지급결정의 변경결정]이라 한다), 제51조의 5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다음 항에서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이라 한다) 또는 제51조의 9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다음 항에서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

라 한다) (이하 [지급결정 등]이라 총칭한다)을 받은 후에,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기타의자(다음 항에서 [관계자]라 한다)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1. 이 법률 상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이란 제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혹은 장애아의 보호자(이하 [지급결정 장애인 등]이라 한다) 또는 제51조의 5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을 받은 장애인(이하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인]라고 한다)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또는 제51조의 8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계속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 또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하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동문)이 적절한지 어떠한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간 마다,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인의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 상황을 검증하고, 그 결과 및 해당 지급결정에 관련된 장애인 등 또는 해당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과 관련된 장애인의 심신상태, 주변환경, 해당 장애인 등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一.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것.

二. 새롭게 지급결정 혹은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또는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혹은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등에 관한 신청을 권장하도록 할 것.

22. 이 법률 상 [자립지원의료]란 장애인 등에 대해 그 심신장애의 완화를 도모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 법률 상 [보장구]란 장애자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수, 의족, 장구,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이 법률 상 [이동지원사업]이란 장애자 등이 원활히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자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이 법률 상 [지역활동지원센터]란 장애자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 의 교류를 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6. 이 법률 상 [복지 홈]이란 주거를 구하는 장애자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주택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자립지원급여

제 1 절 통칙

(자립지원급여)

제6조 자립지원급여는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지역 상담지원 급여, 특례 지역 상담지원급여, 계획 상담지원급여, 특례 계획 상담지원 급여,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7조 자립지원급여는 해당 장애상태에 대해 개호보험법(헤이세이 9년(1997) 법률 제 123호) 규정에 의한 개호급여,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1922) 법률 제 70호)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기타 법령에 기초한 급여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중 자립지원급여에 상당을 받을 수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정령에서 정하는 급여 이외의 급여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자립지원급여에 상당하는 조치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부당이익의 징수)

제8조 기초지자체(정령에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자립지원의료비 지급에 관해서는 광역지자체로 한다. 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자립지원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로부터 그 자립 지원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제51조의 17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 또는 제 54 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지역 상담지원급여, 계획 상담지원 급여, 자립지원의료비 또는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 그 지불한 금액을 반환케 함과 동시에 그 반환액의 14/100를 추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법(쇼와 22년(1945) 법률 제 67호) 제 231 조의 3 제 3항에서 규정하는 법률로 정하는 세입으로 한다.

(보고 등)

제9조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장애인 등의 배우자 혹은 장애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기타 그 세대에 속하거나 속했던 자에 대해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케 할 수 있다.

2.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을 행할 경우,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

제10조 기초지자체 등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자립

지원급여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자립지원의료, 요양개호의료 혹은 보장구의 판매 혹은 수리(이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이 혹은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자에 대해,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해당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 장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등)

제11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장애인 혹은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였던 자에 대해 해당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케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을 행한 자 혹은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보고 혹은 해당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제공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9조 제2항 규정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동조 제3항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자료의 제공 등)

제12조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장애인 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기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의 자산 또는 수입상황에 대하여 관공서에 대해 필요한 문서의 열람 혹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은행, 신탁회사 기타 의

기관 혹은 장애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자립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는 자립지원급여로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제 2 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 1 관 시·정·촌 심사회

(시·정·촌심사회)

제15조 제2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관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제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시·정·촌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위원은 장애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아래와 같다)이 임명한다.

(공동설치지원)

제17조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설치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 상호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를 공동설치 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그 원활한 운영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제18조 이 법률에 정해진 것 외에 시.정.촌심사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2 관 지급결정 등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제19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호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단,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3.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제29조 제1항 혹은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80조 제2항 혹은 지적 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 시설, 희망원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생활보호법(쇼와 25년(1950) 법률 제 144호)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소한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특정시설입소장애인]라 총칭한다)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제5조 제1항 혹은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시설입소장애인 (이하의 항에서 [계속입소장애인]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히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장애자는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장애자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

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4. 전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제24조의 2 제1항 혹은 제24조의 2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아 입소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동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5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이, 계속해서, 제29조 제1항 혹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인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소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생활보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 등의 보호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보호자였던 자]라 한다)가 있었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 등에게 보호자인 자가 없거나, 보호자였던 자가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고, 또는 보호자였던 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장애인 등은, 그 해당 장애인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재지였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5.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이 입소한 특정시설은 해당 특정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인 등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기초지자체에 협력해야 한다.

(신청)

제20조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이 있었을 때, 다음 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항에 규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 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 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를 수행케 해야 한다.

4.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기타 어떤 명칭을 쓰든지에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동문.) 혹은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들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제 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해당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메이지 40년(1907)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법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본다.

6.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보유할 때에는, 해당 조사를 다른 기초지자체에 촉탁할 수 있다.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제21조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 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을 행한다.

2. 시.정.촌심사회는 전항의 심사 및 판정의 실시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급급여의 결정 등)

제22조 기초지자체는 제20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구분, 해당 장애인 등의 개호를 하는 자의 상황, 해당 장애인 등의 주변 환경,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이하 이 조 및 제27조에서 [지급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지급요구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 또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7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제74조 및 제76조 3항에서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라 한다), 지적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갱생상담소,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신보건복지센터 혹은 아동상담소(이하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이라 칭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 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장애자 등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된 장애자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에게, 제51조의 17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도 좋다.

6. 기초지자체는, 전 2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별로 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걸쳐 개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하 [지급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8.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급증(이하 [수급증]이라 한다)을 교

부해야 한다.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3조 지급결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한해 효력이 있다.

(지급결정의 변경)

제24조 지급결정장애자 등은 이미 받은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대해 해당 지급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제22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해 필요할 때에는 지급결정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결정에 관한 지급결정장애자에 대해 수급증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제 1항을 제한다), 제 20조(제 1항을 제한다) 및 제22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는 제 2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을 행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장애지원 구분의 변경 인정을 할 수 있다.

5. 제21조의 규정은 전항의 장애지원 구분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6. 기초지자체는 제 2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을 행한 경우, 수급증에 해당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한다.

(지급결정의 취소)

제25조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를 제한한다)

三.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조 제2항(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四.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소에 관한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해 수급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제26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전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해 광역지자체가 설치한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2. 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4 제1항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제21조 (제24조 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22조 제2항 및 제 3항(이들 규정을 제24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및 제51조의 7 제2항 및 제 3항(이들 규정을 제51조의 9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95 조 제2항 제 1호에서도 마찬가지)를 행하는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은 전항의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2항 중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동문)]은 [광역지자체의 장]으로 본다.

4.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위탁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들 규정 중 [시.정.촌심사회]를 [광역지자체 심사회]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27조 이 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 지급결정, 지급여부의 결정, 수급종,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및 지급결정의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제28조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 一. 재택개호
- 二. 중증방문개호
- 三. 동행 원호
- 四. 행동원호
- 五.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 六. 생활개호
- 七. 단기입소
- 八. 중증장애자 등 포괄지원
- 九. 시설입소지원

2.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 一. 자립훈련
- 二. 취업이행지원
- 三. 취업계속지원
- 四. 공동생활원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제29조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시행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혹은 장애자 지원시설(이하 [지정장애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에게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또는 희망원로부터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 범위 내에 한함. 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식사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 혹은 체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창조적 활동 혹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특정비용]이라 한다)를 제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으려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급증을 제시해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가액은 1개월에 대해, 제1호에서 드는 액수에서 제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

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가계의 부담 능력 그 외의 사정을 참작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이 전호에서 드는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 가액)

4.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으로써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결정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본다.

6. 기초지자체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3항 제1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 또는 제44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에 비추어 심사한 뒤 지불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법(쇼와 33년(1958) 법률 제 192호) 제4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8. 위의 각항에 정하는 바 외에 개호급여 및 훈련급여의 지급 및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의 개호급여 및 훈련 등 급여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

제30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의 범위 내의 것에 한함)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함)에 대하여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一.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이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다음과 같은 사업소 또는 시설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가 -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동조 제2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하 [기준 해당 사업소]라 한다)

나 - 제44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동조 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시설(이하 [기준해당시설]이라 한다)

三.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2. 광역지자체가 전항 제 2호 가 및 나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자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비밀 보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3.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가액은, 월당, 그 달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의 합산액에서, 각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정령에서 정하는 비용이 해당 합계한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여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전조 제3항 제 1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

二.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특정 비용을 제함) 비용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

4. 전 2항에 정한 것 외에 특례개호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

제31조 기초지자체가 재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별사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움을 인정한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받는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제 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액]은, [가액]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가 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지급결정 장애자 등이 받는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 훈련등급여의 지급이 전조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항의 [---을 공제하고 남은 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이 정한다]는, [-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가 정한 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 4 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34조 기초지자체는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원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특정입소 등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중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1항에서 [특정장애인]라 한다)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또는 공동생활 원조가 이뤄지는 곳에 입주하고, 해당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특정 입소 등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특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공동생활 원조를 받는 주거에서의 식사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거주에 소요된 비용(동항에서 [특정입소 등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를 지급한다.

02. 제29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3. 전 2항에 정하는 바 외에,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의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35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혹은 기준 해당 시설 또는 공동생활원조를 받는 주거에서의 특정 입소 등 비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一. 특정장애자가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二. 특정장애자가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2.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5 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및 지정상담지원 사업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36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서 [서비스사업소]라 한다)별로 행한다.

2. 취업계속지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전항의 신청은 해당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정해 실시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요양개호에 관련된 지정신청에 있어서는 제7호를 제외한다) 중 어느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一. 신청자가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한 자가 아닐 경우

二.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및 기능 및 인원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三. 신청자가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四.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되기 전의 자일 때.

五. 신청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의 보건의료 혹은 복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되기 전의 자일 때.

五의 2. 신청자가 노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관해 정령으로 정한 것 의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자의 경우

六. 신청자가 제50조 제 1항(동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해당 지정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절법(헤이세이 5년(1993) 법률 제 88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던 날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그 서비스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이었던 자로 해당 취소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며, 해당 지정취소를 당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있던 날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관리자였던 자로 해당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일 때. 다만, 해당 지정취소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취소의 해당지정 취소처분이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가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처 상황 기타 해당 사실에 관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七.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신청자(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 대해 같다.)의 주식(株式)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신청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이하 이 호에 대해 [신청자의 모 회사 등]이라 한다), 신청자의 모 회사 등이 주식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또는 해당 신청자가 주식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것 중, 해당 신청자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가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 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다만, 해당 지정취소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취소의 해당지정 취소 처분이 된 사실 및 해당사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처 상황 기타 해당 사실에 관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八. 신청자가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던

날부터 해당 처분일자 또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사이에 제46조 제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청을 한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한다)로, 해당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九. 청자가 제48조 제1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의 27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일로부터 청문 결정 예정일(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 실시 결정을 전망한 날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해당 신청자에게 해당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일을 통지했을 경우의 해당 특정일을 말한다)까지의 사이에 제46조 제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폐지신고를 한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十.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46조 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청이 있던 경우로, 신청자가 동호의 통지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신고에 관한 법인(해당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인을 제한다)의 임원 등 또는 해당 신고에 관한 법인이 아닌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한다)의 관리자였던 자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十一. 신청자가 지정신청 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일 때.

十二. 신청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등 중 제4호에서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전호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十三.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자로, 그 관리자 중 제 4호에서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광역지자체가 전항 제 1호의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다.

5. 광역지자체의 장은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제 1항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 동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광역지자체 혹은 해당구역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규정의 변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

제38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자지원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장애자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정함으로써 행한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자 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의 총원이 제 89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36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은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제39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시

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려 할 때 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입소정원을 증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자지원시설에 관한 동항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전항의 지정변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지정의 갱신)

제41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시설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잃는다.

2. 전항의 갱신 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지정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3. 전항의 경우, 지정이 갱신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4.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 1항의 지정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 책무)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이하 [지정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재활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해당 장애자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자 등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정사업자 등은 그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거나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지정사업자 등은 장애인 등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별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가 전2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운영에관한사항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인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4.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제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 신고를 할 경우, 해당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해당지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던 자로서, 해당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와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조정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기준)

제44조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가 전2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 등에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4.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설치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퇴를 할 때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예고 기간의 개시일의 전날에 해당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자로서, 해당 지정의 사퇴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시설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5조 삭제

(변경신고 등)

제4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중단했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재개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

다.

3.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는 설치자의 주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사퇴)

제47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은 3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그 지정을 사퇴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제43조 제4항 또는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할 수 있다.

2. 후생 노동대신은 동일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 규정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에 있어서, 제43조 제4항 또는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지정 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넘어서 광역적인 견지에서 조언 및 원조를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48조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였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에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 2항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3. 제 2항의 규정은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권고, 명령 등)

제 49 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一. 해당 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가, 다음의 각 (희망원의 설치자는, 제 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서도 같다)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一.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44조 제 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44조 제 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 장애 복지 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44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전 2항의 기간 내에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부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행한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희망원의 설치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의 어느 쪽에 해당하든지, 그 취지를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혹은 상담지원사업소 또는 시설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제29조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36조 제3항 제4호부터 제5호의 2까지, 제1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2조 제3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
- 三.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있어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四.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五. 개호급여 혹은 훈련 등 급여 또는 요양개호의료비의 청구에 관하여 부

정이 있었을 때.

六.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명령이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

七.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이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가 요구되었음에도 응하지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이 그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했을 때를 제외한다.

八.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29조 제1항의 정을 받았을 때.

九. 전 각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이 법률타 국민의 보건의료 혹은 복지에 관한 법률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들 법률에 기초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했을 때.

十. 전 각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十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등 중 지정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 효력을 정지하려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十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관리자가 지정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려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2.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때 그 취지를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지정장애자지원시설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공시)

제51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장애자지원 시설로 지정을 했을 때.
- 二.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의 신고가 있을 때.
- 三.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사퇴가 있을 때.
- 四. 전조 제 1항(동조 제 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을 소했을 때.

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 지정사업자등은 제42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이행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지정사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一. 다음호에 든 지정사업자 등 이외의 지정사업자 등 광역지자체의 장

二.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사업자 등 (희망원 설치자를 제외한다. 제4항, 다음 조 제 2항 및 제3항 및 제51조의 4제 5항에 대해서도 같다) 또는 희망원 설치자 후생노동대신

3. 전항 규정에 의해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은, 그 신고사항 변경 시는,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대로, 속히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서는 [후생노동대신 등]이라 한다) 신고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지정사업자등은, 동항 각 호의 구분변경에 따라, 동항의 규정대로 해당신고를 한 후생노동대신 등 이외의 후생노동대신 등에 신고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그 취지를 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등에도 신고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보고 등)

제51조의 3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동조 제4항의 규정대로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은, 동항의 규정대로 신고한 지정사업자등을 제한다)가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등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사업자 등 혹은 해당 지정사업자등의 종업원에게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해당지정사업자 등의 해당지정에 관한 사업소 또는 시설, 사무소 기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관련된 지정을 한 광역지자체의 장(다음 조 제 5항에 대해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라 한다)와 밀접한 연계 하에 실행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실시되었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사업자등의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은 전항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 1항의 권한을 사용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그 결과를 해당권한의 사용을 요청한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4 제51조의 2 제 2항의 규정대로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동조 제4항의 규정대로 신고를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동항의 규정대로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을 제한다)이, 동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

지 않을 시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대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등이, 동항의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등은, 제 1항의 규정대로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서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대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사업자 등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대로, 해당 위반내용을 관련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또는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액 등]이라 한다)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자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을 지급하다는 취지결정(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이라 한다)를 받아야만 한다.

2. 제19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서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51조의 6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받고자 하는 장애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제 20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급여여부 결정 등)

제51조의 7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자의 심신 상태, 해당 장애자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상담지원 급여등의 지급의 여부결정(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 12에 대해 [급여여부결정]이라 한다)를 한다.

2.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등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 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여여부결정과 관련된 장애자,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전조 제 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자에게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장애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 대신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기초지자체는 전 2항의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급여여부결정을 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로 1개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역상담지 급여등을 지급하는 지역상담지원의 양(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량]이라 한다)를 정해야 한다.

8.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하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내에 한해 그 효력이 있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는, 실제로 받고 있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제51조의 7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감안,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결정과 관련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을 제한다) 및 제51조의 7(제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 항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는, 제2항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을 했을 경우, 지역상담지원 수급자 중에 해당결정과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제51조의 10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련된 장애자가,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갖게 되었을 때(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과 관련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갖게 되었을 때는 제외됨.).

三.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과 관련된 장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의 6 제2항 및 전조 제 3항에 대해서 준용하는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四. 그 외 정령으로 정할 때.

2. 전항 규정대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취소와 관련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제51조의 11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 9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등에 의한 기술적사항에 대해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1조의 12 제51조의 5부터 전조까지 정한 것 외에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급여여부결정,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 및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에 관한 필요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은, 지역상담지원에 대해서 다음 조 및 제51조의 15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4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지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이하 [지정지역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지역상담지원 급여량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동일하다.)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역상담지원급여를 지급한다.

2.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은 지정지역상담지원 종류별로 지정지역상담지원으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실제로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4.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때는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으로써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한도에서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를 대신하여 해당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지불되었을 때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기초지자체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장이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을 청구했을 때에는, 제 3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51조의 23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

(지정지역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대로 심사 후, 지불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대로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8. 전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및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의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관계에 필요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5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제51조의 6 제1항을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효력이 생긴 전 날까지의 사이에 긴급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로 한 비용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은 전조 제3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로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비용을 초과시, 해당 현재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2 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은, 계획상담지원에 대해 다음 조 및 제51조의 18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7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한다.

一. 제22조 제4항(제24조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 0조 제1항 혹은 제 24조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자 혹은 장애아의 보호자 또는 제51조의 7

제4항(제51조의 9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대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51조의 6 제1항 혹은 제51조의 9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 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인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계속 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2.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은, 지정서비스이용지원 또는 지정계속서비스이용지원(이하 [지정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의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3.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 등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 등 이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으로써 해당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 등에게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4. 전항 규정에 따라 지불된 경우,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인 등에게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청구받았을 때 제 2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51조의 24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계획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비추어 심사 후 지불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7. 전 각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한다.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8 기초지자체는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 지정계획상담지원 이외의 계획상담지원 (제51조 24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동조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하는 사업소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기준해당계획 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경우, 필요 시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은 본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대해, 전조 제 2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3. 전 2항에 정하는 것 외에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에 관계된 필요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3 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19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및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관에 대해 [일반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

2. 제36조 제3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6조 제3항 제1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자]라는 것은 [법인]으로 재해석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0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을 하는 자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한 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상담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특정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

2. 제36조 제3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6조 제3항 제1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자]라는 것은 [법인]으로 재해석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갱신)

제51조의 21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들의 효력을 잃게 된다.

2.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에 지정된 갱신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이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의사결정지원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초 지자체, 공공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를 도모하면서, 상담지원을 해당 장애인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자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상담지원의 재질을 평가하고,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담지원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3.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인 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시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3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제51조의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신고일 전 1개월 내에 해당 지정 지역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역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4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기준대로 지정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 해당 신고일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계획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의 신고 등)

제51조의 25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휴업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로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 까지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3.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휴업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4.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 까지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제51조의 26 제 47 조의 2의 규정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실시하는 제51조의 2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준용한다.

2. 기초지자체의 장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의한 제51조의 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기타 관계자 상호간의 연락 조정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한 조언 혹은 원조를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51조의 27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시에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혹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라 한다)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고,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사무소 기타 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에 관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 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혹은 지정특정상

담지원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하 이 항에 대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 특정상담지원 사업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며 또는 해당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에 관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3. 제9조 제 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 시, 동 조 제3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28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든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이 제51조의 23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51조의 23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지역상담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51조의 2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2. 기초지자체의 장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든 경우에 해당할 때,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一. 해당 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이, 제51조의 24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51조의 24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계획상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51조의 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 기초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상담 지원사업자가 전 2항의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았을 시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를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기초지자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받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해 명령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지급에 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한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든 경우의 어느 쪽에 해당할 때, 그 취지를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소재지의 광역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 29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 관한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고, 또는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19 제 2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5호, 제0호의 2 또는 제 12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二.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2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三.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51조의 23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四.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3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기준에 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관해서 부정이 있었을 때.

六.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七.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 제51조의 27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으며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에는 제외된다.

八.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을 받았을 때.

九.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복지에 관한 법률로 정령으로 정한 것 또는 이러한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을 때.

十.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지역상담지원에 관해 부정이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十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일반상담지원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지정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정지를 하려고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지역상담지원에 관해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2. 기초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0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5호의 2 또는 제 12호의 어느 쪽 사항에 해당될 때.

二.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三.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특정 상담지원 사업

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서 제51조의 24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을 때.

四.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4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계획상담지원사업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五.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을 때.

六.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七.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 제51조의 27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치 않거나, 혹은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에 관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의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에는 제외된다.

八.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받았을 때.

九.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이 법 그 외 국민의 복지법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한 명령 혹은 처분을 위반했을 때.

十. 전 각 호의 경우 외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계획상담지원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十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특정 상담지원 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중 지정취소 또는 지정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 이전 5년 이내에 계획상담지원에 관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3.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지급에 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시)

제51조의 30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 二. 제51조의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가 있었을 때.
 - 三.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2. 기초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 二. 제51조의 2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가 있었을 때.
 - 三.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제 4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제51조의 22 제3항에 규정하는 의무이행이 확보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一. 다음호 및 제 3호에 든 지정상담지원사업자 이외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 二. 특정상담지원사업 만을 운영하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一의 기초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 三.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3. 전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

경이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대해 [후생노동대신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동항 각 호에 든 구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를 한 후생노동대신 등 이외의 후생노동대신 등에 신고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등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도모한다.

(보고 등)

제51조의 32 전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 생 노동대신 등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를 제외하다.)에게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 혹은 해당 지정상담 지원사업자의 종업원에게도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 하고,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소, 사무소 기타 지정지역상담지원 혹은 지정계획상담지원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 관해서 지정을 한 광역지자체의 장(다음 조 제5항에 대해 [관계광역지자체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해서 지정을 한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5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 자체의 장]이라 한다)와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과 밀접한 연계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 후생노동대신에게, 기초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자 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권한을 사용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33 제51조의 31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를 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동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지 않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에 의해 권고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동항의 기한 내에 이에 불응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받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 3항의 규정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위반내용을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 절 자립지원의료비, 의료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 개호의료비의 지급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는 취지의 인정(이하 [지급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제19조 제2항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인정에 대해 동조 제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지급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53조 지급인정을 받으려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광역지자체가 지급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가 없을 경우 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지급인정 등)

제54조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이 그 심신장애의 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장애인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상황, 치료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지급인정을 행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의료를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쇼와 38년(1963) 법률 제 168호)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15년(2003) 법률 제 110호)의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초지자체 등이 지급인정을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한다.

3. 기초지자체는 지급인정을 할 때, 지급인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지급인정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전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립지원의료수급증(이하 [의료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제55조 지급인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급인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한해 유효하다.

(지급인정의 변경)

제56조 지급인정장애인 등은 이미 받고 있는 지급인정에 관한 제 54 조 제2항 규정으로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 등에 대해 지급인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 등은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대해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인정의 변경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대해 의료수급증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 제2항 규정은 기초지자체 등이 행하는 전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에, 동조 제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전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 등은 제 2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수급증에 해당 인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뒤 반환해야 한다.

(지급인정의 취소)

제57조 지급인정을 한 기초지자체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급인정

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그 심신장애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급인정장애자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기초지자체 등 이외의 기초지자체 등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지급인정에 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三.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四. 기타 정령으로 정할 때.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인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소에 관한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의료수급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제58조 기초지자체 등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제 54 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자립지원의료(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라 한다)를 받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인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한다.

2.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으려는 지급인정장애자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의료수급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자립지원의료비의 가액은 월당, 제1호에 든 가액(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식사요양(건강보험법 제 63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 2호에 드는 가액의 합산액,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생활요양(동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 3호에 드는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 및 생활요양을 제한다)

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 장애의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해당 산정한 가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 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식사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三. 해당지정자립지원의료(생활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 조의 2 제 2항에 규정하는 생활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4. 전항에 규정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를 수 없을 때 및 이를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립지원의료비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게 지불 할 수 있다.

6.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에는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제59조 제54조 제2항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혹은 진료소(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문.) 또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동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행한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

가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一.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약국이 건강보험법 제 63 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의료기관 혹은 보험약국 또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이 아닐 때.

二.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혹은 약국 또는 신청자가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에 관하여 진료 또는 조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염려가 있어 여러 번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을 때.

三. 신청자가 제6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일 때.

四. 전 3항 이외에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약국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 현저히 부당할 때.

3. 제63조 제3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7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갱신)

제60조 제54조 제2항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

2. 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의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진료방침)

제62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진료방침은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의 예를 따른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진료방침에 따를 수 없을 때 및 적당하지 않을 때의 진료방침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

제63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변경신고)

제64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해당 지정에 관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의 사퇴)

제65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1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쳐 그 지정을 사퇴할 수 있다.

(보고 등)

제66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혹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 의사, 약사 기타 종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서 [개설자였던 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 의사, 약사 기타 종업원(개설자였던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설비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3.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광역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대한 기초지자체 등의 자립지원의료비 지분의 일시 정지를 지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보고, 명령 등)

제67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1 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항기간 내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자립지원의료를 행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에 관한 의료기관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취소 등)

제6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관한 제54조 제2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59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二.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59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제 36조 제3항 제4호, 제5호의 2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三.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1 조 또는 제 62 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四. 자립지원의료비의 청구에 관하여 부정이 있었을 때.

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6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보고 혹은 진료

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

六.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설립자 또는 종업원이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종업원이 그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를 제한다.

2. 제50조 제1항 8호에서 제12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공시)

제69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54조 제2항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을 지정했을 때.
- 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것을 제한다)가 있었을 때.
- 三.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지정사퇴가 있었을 때.
- 四. 전조 규정에 의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0조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결정에 관한 요양개호의료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에게 해당 요양개호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

2. 제58조 제 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요양개호의료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1조 기초지자체는 특례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가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로부터 해당 요양개호의료(이하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에 대해 해당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기준해당 요양개호 의료비를 지급한다.

2. 제58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준용)

제72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등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사업 혹은 기준해당시설에 준용한다.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제73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 사업소 혹은 기준해당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비부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내용 및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자립지원의료비]라 한다)의 청구를 수시로 심사하고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제58조 제 5항(제 7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비부담의료기관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내리는 전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본법(쇼와 23년(1948) 법률 제 129호)에 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 심사위원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기초지자체는 공비부담의료기관에 대한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연합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6.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 이의신청법(쇼와 37년(1962)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제74조 기초지자체가 지급인정 또는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해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75조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지급인정, 의료수급증, 지급인정의 변경 인정 및 지급인정의 취소 기타 자립지원의료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5 절 보장구비의 지급

제76조 기초지자체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의 장애상태를 보아, 해당장애자 등이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일 경우, 해당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장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보장구비의 가액은 월당으로 동일한 달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장비

에 대해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애인 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기준액의 합계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3. 기초지자체는 보장구비의 지급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제19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기초 지자체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 전 조항에 정하는 것 외에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6 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 2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 장애인 등이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2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대상 서비스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각각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 실제로 소요된 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해당 비용에 지급된 개호급여 등 및 동법 제 20조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게,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를 지급한다.

2. 전 항에서 정하는 것 그 밖에,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액 기타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부담이 가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지역생활지원사업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7조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一. 장애인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계발을 위한 사업

二.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의 가족, 지역주민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三.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간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다)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써,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五. 장애인에 관련된 민법(메이지 29년(1896년) 법률 제89호)에 정한 후견, 보좌 및 보조업무를 적정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을 꾀하기 위한 연수 사업.

六.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기타 장애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 기타 일상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 소통지원 등(수화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장애인 등과 기타의 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파견, 일상생

활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의 급여또는 대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七.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

八. 이동지원사업

九. 장애인 등을 지역활동지원센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니게 하며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기회의 제공, 사회와의 교류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2.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실시체제의 정비상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를 대신하여 전항 각호에 든 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 외에, 현재 주거를 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 홈 기타 시설에서 해당시설의 방실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제77조의 2 기간 상담지원 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전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든 사업 및 신체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지적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 5항제 2호 및 제3호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초지자체는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일반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4. 전항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정장애인복지사업자 등 의료기간, 민생위원법 (쇼와 23년(1948년) 법률 제 198호)에 정한 민생위원,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신체장애자상담원, 지적장애자 복지법 제15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적장애자상담원,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고, 또는 파견하는 사업의 관계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노력해야만 한다.

6. 제3항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아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혹은 그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8조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 사업으로 제77조 제1항 제3호, 제 6호 및 7호에 든 사업 중 특히 전문성이 높은 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및 특히 전문성이 높은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여 또는 파견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의 파견에 관련된 기초지자체와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기타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2. 광역지자체는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혹은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자를 육성하는 사업 기타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 및 시설

(사업의 개시 등)

제79조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 二. 일반 상담지원 사업 및 특정 상담지원 사업
- 三. 이동지원사업
- 四. 지역활동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 五. 복지 홈을 경영하는 사업

2.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에게 신고하고, 전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려 할 때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기준)

제80조 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82 조 제 2항에 있어 같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가 전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및 복지 홈에 관한 방의 평면적

三.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과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의 안전 확보 및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관한 이용정원

3. 제 1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치자는 동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등)

제81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 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혹은 이동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의 설치자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혹은 그 사업소 혹은 그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사업의 정지 등)

제82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 시행자가 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규정에 기초한 명령 혹은 이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그 사업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꾀하거나 그 사업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했을 때, 또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자 또는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의 설치자가 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 규정에 기초한 명령 혹은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했을 때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이 제80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 규정에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설치자에 대해 그 시설의 설비 혹은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 혹은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등)

제83조 국가는 장애자지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쇼와 26년(1951) 법률 제 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기준)

제84조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가 전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장애인지원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이용 정원

3.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의 기준을 사회복지법 제65조 제1항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동법 제62조 제 4항, 제65조 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고의 징수 등)

제85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해당시설의 장애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그 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사업의 정지 등)

제86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이 제84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 5 장 장애인복지계획

(기본방침)

제87조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공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三.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및 제89조 제 1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四. 기타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후생노동대신은 기본 지침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본기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장애인 등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장애인 등이 처한 환경의 변화,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속히 기본지침을 변경하도록 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8조 기초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기초지자체 장애인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二.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종류별로 필요한 양을 예상

三.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 전 항 제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 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로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二. 전 항 제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 계획상담지원 및 동항 제3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 내의 장애자 등의 숫자, 그 장애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5. 기초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에 있는 장애자 등의 심신상황, 처해진 환경,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들 사항을 감안하여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6.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자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자계획, 사회복지법 제107조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역 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8. 기초지자체는 제8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이하 이 항 및 제 89조 제6항에서 [자립지원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했을 때, 기초지자체장애인복지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 장애인 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지방장애인복지추진협의회를 설치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장애인 복지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0.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1.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자체 없이 이를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8조의 2 기초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제2항 각호 사항(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제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 광역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二.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별로 해당 구역의 각 년도 지정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량의 예상

三. 각 년도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 필요 입소정원 총수

四.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

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 전항 제 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二. 전항 제 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三.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구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四. 전항 제2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동항 제 4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 기본법 제11조 제 2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자계획, 사회복지법 제108조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지역 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의료법(쇼와 23년(1948) 법률 제 205호) 제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계획에 상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자의 퇴원 촉진을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6.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했을 때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먼저 협의회 의견 청취해야 한다.

7.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장애인 기본법 제34조 제 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8.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9조의 2 광역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제2항 각호 사항(광역지자체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제 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협의회의 설치)

제89 조의 3 지방공공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장애인 등의 지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장애인 등 및 그 가족과 함께 복지, 의료, 교육 또는 고용에 관한 직무 종사자 기타 관계자(다음 항에서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의 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이 상호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장애자들의 지원 체제에 대한 과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응한 체제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장의 조언 등)

제90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에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은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방법 기타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상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

제91조 국가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또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에 힘써야 한다.

제 6 장 비용

(기초지자체의 지급)

제92조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 一.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 94 조 제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三.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제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

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四.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五.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六.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의 지급)

제93조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一.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광역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

제94조 광역지자체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

一. 제92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드는 비용 중,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별 인원수, 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인원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이라 한다)의 25/100.

二. 제92조 제3호 및 제 4호에 든 비용의 25/100

2.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6호에 드는 비용의 25/10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부담 및 보조)

제95조 국가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

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의 50/100

二.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3호 및 제4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三.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 1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2.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 9 및 제51조의 10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한 사무의 50/100 이내.

二.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중 제92조 제6호 및 제93조 제2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이내.

(준용규정)

제96조 사회복지법 제 58 조 제 2항에서 제 4항까지의 규정은 국유재산 특별조치법(쇼와 27년(1952) 법률 제 219호) 제2조 제2항 제 3호의 규정 또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 4호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준용한다.

제 7 장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자 자립지원법 관계 업무

(연합회의 업무)

제96조의 2 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그밖에, 제29조 제 7항(제34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 14 제7항 및 제51조의 1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 급여,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계 획상담지원 급여의 지불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의결권의 특례)

제96조의 3 연합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업무(다음 조에서 [장애자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약대로 의결권에 관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구분 경리)

제96조의 4 연합회는,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에 관한 경리는, 기타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 8 장 심사청구

(심사청구)

제97조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의신청심사회)

제9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 1항의 심사청구 사건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개호급여 등 이의신청심사회(이하 [이의신청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심사회의 의원 정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수준 높은 인격과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 심사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99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회장)

제100조 이의신청심사회에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회장 1인을 선출한다.

2. 회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전항 규정에 준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제101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2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수리했을 때 원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위한 처분)

제103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혹은 관계인에 대해, 보고 혹은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그 출두를 명해 심문하거나 의사 기타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다음 항에서 [의사 등]이라 한다)에게 진단 기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해 출두한 관계인 또는 진단 기타 조사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 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정령 등에의 위임)

제104조 이 장 및 행정이의신청법에서 정하는 바 외에 심사청구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의신청심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의신청심사회를 설치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제105조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 9 장 잡칙

(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05조의 2 연합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들 규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헤이세이 17년(2005년) 법률 제 123호) 제96조의 3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대도시 등의 특례)

제106조 이 법률 중 광역지자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 및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핵심도시(이하 [핵심도시]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제59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아동상담소 설치도시(이하 [아동상담소 설치도시]라 한다)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도시 혹은 핵심도시 또는 아동상담소 설치도시(이하 [지정도시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이 경우, 이 법률 중 광역지자체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도시 등에 적용한다.

(권한의 위임)

제107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전 항 규정에 의해 지방후생국장에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실시규정)

제108조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10 장 벌칙

제109조 시.정.촌심사회, 광역지자체심사회 혹은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 또는 이들 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을 행한 자의 업무 상 비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0조 제 4항(제24조 제 3항, 제51조의 6 제2항 및 제51조의 9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7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제48조 제1항(동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 3 제1항, 제51조의 27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1조의 3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또는 이들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답변을 하거나, 혹은 이들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형을 부과한다.

제1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03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출두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진술 혹은 보고를 하거나 진단 기타 조사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의신청심사회가 행하는 심사절차의 청구인 또는 제102조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기초지자체 기타 이해관계인은 예외로 한다.

제114조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15조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에 대해 10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1조의 9 제2항 또는 제51조의 10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 또는 지역 상담지원 수급자증의 제출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8년(2006)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드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부칙 제24조, 제44조,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에서 제108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 공포일

二. 제5조 제1항(재택개호, 행동원호, 아동 주간 서비스, 단기입소 및 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제한다),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서 제15항까지, 제17항 및 제19항에서 제22항까지, 제2장 제 1절(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제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 8호에서 제10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제41조(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 제7조,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서 제7항까지(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치자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0조 제3항 및 제 4항, 제51조(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70조에서 제72조 까지, 제73조, 제74조 제2항 및 제75조(요양개호의료 및 기준 해당요양개호의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장, 제92조 제1호(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한 한한다), 제 2호(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3호 및 제4호,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제 2 호 (제92조 제 2호에 관한 부분을 제한한다) 및 제2항 제 2호, 제96조, 제 110 조(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 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 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 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2조(제48조 제1 항 규정을 동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제114조 및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부칙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제26조,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 제35조,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 제46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6조에서 제60조까지, 제62 조, 제65조, 제68조에서 제70조까지, 제72조에서 제77조까지, 제 79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에서 제100조까지,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 조, 제113조 및 제115조의 규정 헤이세이 18년(2006) 10월 1일

三. 부칙 제63조, 제66조, 제97조 및 제111조의 규정 헤이세이 24년 4월 1일(2012년 4월).

(자립지원급여의 특례)

제2조 아동복지법 제 63 조의 2 및 제 63 조의 3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아동은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10까지, 제51조의 14, 제51조의 15, 제 70조, 제 71조, 제76조의 2, 제92조, 제 94 조 및 제 95 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장애자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장애자로 간주된 장애아로써, 특정시설에 입소하는 전날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24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아 입소급여의 지급을 받고, 또는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혹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동법 제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 호 또는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로 간주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하거나, 제5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 정해진 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장애아에 관한 제19조 제 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 동항중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 날에 해당 장애자 등의 보호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보호자였던 자]라 한다)]는, [해당 장애아가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날의 해당 장애아의 보호자]로, 동항 단서 중에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 날]은, [해당 장애아가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날]로, [보호자였던 자]는 [해당 장애아의 보호자]로 재해석한다.

(검토)

제3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 법률 및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의 시행상황, 장애아동의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에 관한 실시주체의 존립방법 등을 감안하여 이 법률 규정에 대해 장애자 등의 범위를 포함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제2장 제2절 제5관, 제3절 및 제4절 규정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정부는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 장애자 등의 경제적 상황 등에 입각하여 취업지원을 포함한 장애자 등의 소득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부칙 제1조 제2호에

든 규정의 시행일 전 일까지는 제19조 제3항 중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 1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훈련 등 급여 혹은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을 받거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32 제1항 규정에 의해 입주조치가 취해져 공동생활지원을 행하는 주거(이하 이 항에서 [공동생활주거]라 한다) 에 입주한 장애자,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해 동향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 지급을 받거나 동법 제18조 제3항]으로, [장애자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이하 이 항에서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이라 한다)]로, [장애자지원시설, 희망원, 제5조 제1항 혹은 제 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공동생활주거,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로, [입소 전]은 [입주 또는 입소 전]으로, [입소했다]는 것은 [입주 또는 입소했다]로, 동조 제3항 중 [입소하여]는 [입주 또는 입소하여]로 한다.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1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해 재택생활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아동의 보호자,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신체장애자복지법 및 제17조의 5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생활지원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 및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해 주택생활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자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이 내려졌다고 간주되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이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5조 중의 [둔다]는 [둘 수 있다]로, 제 20조 제2항 중 [조사케해야 한다]는 [조사케 할 수 있다]로, 제21조 제1항 중 [행한다]는 [행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1항 중 [장애지원 구분]은 [장애지원 구분 또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로 한다.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시행일부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22조 제2항 중 [제9조 제6항]은 [제9조 제5항]으로, [제9조 제 5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제9조 제4항]으로 한다.

(개호급여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시행일부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관해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로 한다.

- 一. 재택개호
- 二. 행동원호
- 三. 아동 주간 서비스
- 四. 단기입소

五. 외출개호(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재택개호,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재택개호 등 사업 및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재택개호 중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말한다. 이하 같음)

六. 장애자 주간 서비스(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주간 서비스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주간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음)

2.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상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외출개호 및 장애자 주간 서비스를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외출개호 또는 장애자 주간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을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각각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호급여 등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시행일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29조 제3항 중 [의 90/1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터 해당 비용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재택개호사업(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를 행하는 자로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재택개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2.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행동원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아동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아동 주간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

을 받은 자로 본다.

4.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아동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 4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4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15 조의 5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단기입소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단기입소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현재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지역생활지원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공동생활지원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해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해당자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6조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 시행일 현재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재택개호 등 사업(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외출개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2. 시행일 현재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전 2항의 규정으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상의 시행일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호급여 및 훈련등급여의 지불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시행일로부터 헤이세이 19년(2007)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제29조 제8항 중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32조 제6항 중 [연합회]라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립지원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육성의료급여 또는 육성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받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갱생의료급여 또는 갱생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받는 장애인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에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14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9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의료를 담당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시행일에 제54조 제 2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제 54 조 제 2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의료기관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 59 조 제 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60조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시행일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상당하는 사업에 관한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34조의 3 제 1항,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6조 제1항,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 제1항 또는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시행일에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2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82조 중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4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25의 2]로 한다.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시행일부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94조 제1항 제 2호 중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용(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부칙 제41조 제1항 또는 제 58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갱생지원시설 또는 부칙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지원시설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8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통근숙소를 제한다)는 장애자지원시설로 보아 제19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 이후 당분간, 제19조 제3항 중 [제18조 제 2항]은 [제18조]로,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조치]는 [제15조의 4 혹은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혹은 입주조치]로, [또는 제5조 제 1항]은 [혹은 제5조 제 1항]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여]는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공동생활개호 혹은 공동생활지원을 하는 주거(이하 이 항에서 [공동생활주거]라 한다)에 입주하여]로, [또는 동법]은 [공동생활주거 또는 동법]으로, [입소 전]은 [입소 또는 입주 전]으로, [특정시설에 입소하여]는 [특정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입소했다]는 [입소 또는 입주했다]로, 동조 제 4항중 [제18조 제 2항]은 [제18조]로,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조치]는 [제15조의 4혹은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혹은 입주조치]로, [입소했다]는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동조 제5항 중 [입소하여]는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한다.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해 시설훈련 등 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자 및 동법 제17조의 32 제4항 규정으로 동조 제 1항에 규정하는 국립시설에 입소한 장애자 및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2 제2항 규정으로 시설 훈련 등 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해당 장애자가 동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자에 대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구법지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부칙 제41조 제1항 또는 제 58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칙 제41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지원시설 또는 부칙 제 58 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지원시설로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전 일,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 1항의 지정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1 제 1 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 1항에서 [구법지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구법지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시설지원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시설지원에 상당하는 서비스(이하 [구법시설지원]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보아,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에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이 있었다고 본다.

(구법시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 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일 경우, 전 조의 규정에 의해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이 있다고 간주하는 구법지정시설(제 50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항 규정으로 해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제한다. 다음 조에서 [특정 구법지정시설]이라 한다)에서 구법시설지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지정구법시설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 구법시설지원(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것에 한한다)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를 지급한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개호급여의 가액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월당으로 제 1호에서 드는 가액에서 제 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 구법시설지원에 대해서 지정구법시설지원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특정 비용을 제한다)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 해당 실제로 지정 구법시설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二.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한 가액이 전호에서 드는 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

(특정 구법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부칙 제1조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1 제 2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2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하 이 조에서 [구법시설 지급결정]이라 한다)가 내려져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 1항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1 제 1항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구법수급자]라 한다)는, 부칙 제1조 제 2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계속하여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 지정시설 또는 장애인 지원시설 혹은 희망의 뜰에 입소하여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에 각각 소재하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거주지를 보유하게 된 특정구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1 이상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에 계속 입소해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는 제19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법시설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 것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이 적용되는 장애자가 입소한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 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은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이 소재하는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자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 기

초지자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

3. 특정구법수급자는 부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 규정의 시행일 전 날까지에 한해, 동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하여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관한 제 50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 규정의 지정취소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계속하여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특정장애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특정구법수급자에 있어서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특정장애자 지원시설에 계속 입소해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해당 구법시설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는 해당 특정구법수급자를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로 보아 해당 특정구법수급자가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특정구법수급자는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로부터 특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에 대해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에게 동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전항 규정에 의해 특정구법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가액은 제29조 제 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월당으로 제 1호에서 드는 가액에서 제 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제29조 제 3항 제 1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범위 내에서 후생 노동대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한 비용)의 합계액

二.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전항에서 든 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

5. 특정구법수급자(지급결정장애자 등인 경우를 제한다)는 부칙 제1조 제 2

호 규정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 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제 29조 제 2항, 제4항 및 제 5항, 제31조 및 제76조의 2 제 1항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으로 제34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로 본다.

(장애자지원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부칙 제1조 제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제 83 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 중 [미리]는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7조 제3항 또는 사회복지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30조의 2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복지 홈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9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복지 홈(이하 이 항에서 [신체장애자복지 홈 등]이라 총칭한다)의 설치자는 같은 날, 제 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신체장애자복지 홈 등을 복지 홈으로 본다.

3.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34조의 3 제1항,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6조 제1항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아동 상담지원사업, 부칙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 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상담지원사업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상담지원사업(이하 이 항에서 [장애아동상담지원사업 등]이라 총칭한다)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날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장애아동 상담 지원사업 등을 상담지원사업으로 본다.

(시행 전 준비)

제24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드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21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절차, 제 36 조(제 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절차, 제 59 조 규정에 의한 제 54 조 제 2항의 지정절차, 제 79조 제 2항의 신고, 제 88 조 규정에 의한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 계획 책정준비, 제 89 조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책정분비 기타 행위는 이 법률 시행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

(별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 이 법률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별칙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위임)

제122조 이 부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제10조 및 부칙 제4조,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05조, 제124조 및 제131조에서 제133조까지의 규정 공포일

二. 제22조 및 부칙 제52조 제3항 규정 헤이세이 19년 3월 1일

三. 제2조, 제12조 및 제18조 및 부칙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 제 56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제72 조,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 헤이세이 19년 4월 1일

四. 제3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 및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57조, 제66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 89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3조, 제109조, 제114조, 제117조,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 헤이세이 20년 4

월 1일

五. 제4조, 제8조 및 제25조 및 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에서 제31조까지, 제80조, 제82조, 제88조, 제92조, 제101조,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21조 및 제129조 규정
헤이세이 20년 10월 1일

六. 제5조, 제9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6조 및 부칙 제53조, 제58조, 제67조, 제90조, 제91조, 제96조 및 제111조의 규정
헤이세이 24년 4월 1일

(별칙에 관한 경과규정)

제1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동문.)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으로 종전에 예에 따르게 된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 경우, 이 법률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한 별칙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의 각 법률 규정 중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개정 전 각 법률규정에 따른 신고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률시행 전에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명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정 후 각 법률 중 상당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 후의 각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133조 부칙 제3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하는바 외에 이 법률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一. 부칙 제16조 규정, 부칙 제31조 규정 및 부칙 제32조 규정 공포일
- 二. 제1조 규정, 부칙 제3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 및 부칙 제17조 규정 중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1922) 법률 제 70호) 제65조 제2항의 개정규정 헤이세이 19년 1월 1일
- 三. 제3조 규정, 제7조 규정, 제8조 규정 중 약사법 제7조 제1항 개정규정, 제9조 규정(약사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제한다), 제11조 규정, 부칙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 부칙 제18조 규정 중 지방자치법 (쇼와 22년(1947) 법률 제 67호) 별표 제 1 보건원, 조산원, 간호사법 (쇼와 23년 법률 제203호)의 항 및 동표 약사법(쇼와 35년 법률 제146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5조의 규정 헤이세이 20년 4월 1일

(별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 규정에 있어서는 해당 각 규정)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규정으로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 법률 시행 후의 행위 및 이 부칙규정으로 효력이 인정된 경우, 법률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한 별칙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32조 부칙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전조에 정하는 바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일본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지원평가항목과 내용 (106개 항목으로판정)

No		자원구분 평가항목	선택항목				군별
1	1-1	상지마비 등	1.	2. 있다			A
2	1-1	우 상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3	1-1	좌 하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4	1-1	우 하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5	1-1	그 외 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6	1-2	어깨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7	1-2	팔꿈치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8	1-2	다리사이의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9	1-2	무릎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10	1-2	발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11	1-2	그외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12	2-1	잠자리뒤척임(체위교환)	1. 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뭉가를잡으면 할수 있다	3. 할수 없다		A
13	2-2	일어나기	1. 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뭉가를잡으면 할수 있다	3. 할수 없다		A
14	2-3	좌위보지(앉아있기)	1. 할수있다	2. 자기손으로잡으면할수 있다	3. 부축받으면할수 있다	4. 할수 없다	A
15	2-4	양발로 서있기	1. 지탱하지 않고 할수 있다	2. 뭉가지탱할것이있으면할수 있다	3. 할수 없다		A
16	2-5	보행	1. 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뭉가를잡으면 할수 있다	3. 할수 없다		A
17	2-6	휠체어에서 침대로의 이동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 보조	A
18	2-7	이동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 보조	A
19	3-1	일어서기	1. 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뭉가를잡으면 할수 있다	3. 할수 없다		A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 현황과 과제

20	3-2	발로 서 있기	1. 자탱하지 않고 할수 있다	2. 받개를잡으면 할수있다	3. 할수 없다			A
21	3-3	세신(입욕 이외)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4.하지않고있다		A
22	4-1-1	욕창 등	1. 없다	2. 있다.				A
23	4-1-2	욕창 이외 손이 필요한 피부질환 등	1. 없다.	2. 있다.				A
24	4-2	삼킴	1.할 수 있다	2. 지켜보기 등	3. 할수 없다			A
25	4-3	식사섭취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6	4-4	음수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7	4-5	배뇨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8	4-6	배변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9	5-1-1	구강청결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0	5-1-2	얼굴씻기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1	5-1-3	정발(머리빗기)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2	5-1-4	손톱깎기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3	5-2-1	상의 착탈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34	5-2-2	바지 착탈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35	5-3	약 복용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6	5-4	금전관리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7	5-5	전화이용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A
38	5-6	일상의 의사결정(일상생활에 불안,고민에 관한 상담등)	1. 할수있다	2. 특별한경우를 빼고는할수있다	3. 일상적으로곤란	4.할수없다		A
39	6-1	시력	1. 보통	2.약1m떨어진시력확인표그림이 보인다	3.눈앞에노인시력확인표그림이보인다	4.거의안보인다		A

2014 대자연 한일세미나

40	6-2		1.	2.보통소리가겨우들린다	3.엄청큰소리라면대략들린다	4.거의안들린다		A
41	6-3-1	의사전달	1.조사대상자가의사를타인에게전달할수있다	2.가끔전달할수있다	3.거의전달할수없다	4.할수없다		A
42	6-3-2	본인 스스로의 표현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	1.자신의방법과상관없이의사표시를할수있다	2.가끔자신의방법이아니면의사표시가안되는경우가있다	3.항상자신의방법이아니면의사표시를개인한다	4.어떤방법이라도의사표시자체가되지않는다		C
43	6-4-1	개호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	1.개호자의지시가통한다	2.개호자의지시가끔통한다	3.개호자의지시가안통한다			A
44	6-4-2	언어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설명이해	1.언어이외의방법을사용하지않고설명을이해할수있다	2.때때로언어이외의방법을사용하지않고는 설명을이해할수없다	3.항상언어이외의방법을사용하지 않으면 설명을이해할수없다	4.어떤방법이라도 설명그자체를이해할수없다		C
45	5-5-1	매일 일정 이해하는 것이	1. 할수있다	2. 할수없다				A
46	6-5-2	생년월일, 연령을 대답하는 것이	1. 할수있다	2. 할수없다				A
47	6-5-3	면접조사 직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내는 것이	1. 할수있다	2. 할수없다				A
48	6-5-4	자신의 리움을 대답하는 것이	1. 할수있다	2. 할수없다				A
49	6-5-5	지금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1. 할수있다	2. 할수없다				A
50	6-5-6	자신이 있는 장소를 대답하는 것이	1. 할수있다	2. 할수없다				A
51	7-1	물건을도난당했다는 등 피해되는 것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2	7-2	이야기를만들어주위에 퍼트린 일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 현황과 과제

53	7-3	실제없는것이보이거나들리거나 한일이	1. .	2. 가끔있다	3. 있다				A
54	7-4	올다가웃다가감정이불안정하게 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5	7-5	불면증 또는 주야가 바뀐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6	7-6	폭언과 폭행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7	7-7	계속똑같은얘기를하거나불쾌한 소리를내는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8	7-8	큰 소리를 내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9	7-9	조언이나 개호에 저항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0	7-10	목적없이 돌아다닌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1	7-11	“집에가야지”라고안정하지못한 채계속얘기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2	7-12	외출하면혼자서병원.시설.집에돌아오지 못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3	7-13	혼자서 밖에 나가고 싶은 눈으로 계속 있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4	7-14	여러 가지물건을모으거나무단으로들고간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5	7-15	불관리를 하는 것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6	7-16	물건이나의류를부수거나찢거나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7	7-17	불결한행위(배설물을만지다)를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8	7-18	먹을수 없는 물건을 입에 넣은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9	7-19	심한 건망증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70	7-20	특정물건이나사람에대해 심한 집착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B2
71	7-21	많은 움직임이나 멈춤이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1회 이상	5. 거의 매일		B2
72	7-22	혼돈이나 불안정한 행동이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1회 이상	5. 거의 매일		B2
73	7-23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1회 이상	5. 거의 매일		B2

2014 대자연 한일세미나

74	7-24	차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1. .	2. 아주 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1회 이상	5. 거의 매일	B2
75	7-25	타인을 갑자기 안거나 몰래 물건을 가져간 일이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1회 이상	5. 거의 매일	B2
76	7-26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소리를 낸 일이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주 1회이상	4. 하루1회이상	5. 하루에1번	B2
77	7-27	갑자기 달려 없어질것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주 1회이상	4. 하루1회이상	5. 하루에1번	B2
78	7-28	과식,반식(반정도 씹고 넘기는정도) 질식의 위험이 따른다.	1. 없다.	2. 아주 가끔있다.	3. 주 1회이상	4. 거의 매일	5. 거의 매식사	C
79	7-29	기분이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되어 때론 사고력도 저하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0	7-30	확실하기 위해 손을 반복해서 씻는 등 일상동작에 시간이 걸린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B2
81	7-31	타인과 교류를 하는 것이 불안, 긴장으로 외출하지 못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2	7-32	하루종일 누워있거나 방에 계속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3	7-33	애기가정리되지않은채대화가안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4	7-34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 통하지 않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5	7-35	현실에 맞지않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6	7-36	다른사람에 대해 의심스럽게 거부하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7	8-1	링겔의 관리	1. 없다	2. 있다				A
88	8-2	중심적맥영양	1. 없다	2. 있다				A
89	8-3	투석	1. 없다	2. 있다				A
90	8-4	인공항문의 처치	1. 없다	2. 있다				A
91	8-5	산소요법	1. 없다	2. 있다				A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 현황과 과제

92	8-6		1.	2. 있다				A
93	8-7	기관절개의 처치	1. 없다	2. 있다				A
94	8-8	통증의 간호	1. 없다	2. 있다				A
95	8-9	경관영양	1. 없다	2. 있다				A
96	8-10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등의 측정	1. 없다	2. 있다				A
97	8-11	욕창의 처치	1. 없다	2. 있다				A
98	8-12	카테터(콘돔형 카테터, 고정형 카테터, 인공항문등)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1. 없다	2. 있다				A
99	9-1	조리(식단포함)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0	9-2	식사 배식(운반 포함)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1	9-3	청소(정리정돈)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2	9-4	세탁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3	9-5	입욕준비 및 정리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4	9-6	시장보기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5	9-7	교통수단의 이용	1. 자립	2. 지켜보기, 부분보조	3. 모두보조			BI
106	9-8	문자의 시각적 인식사용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두보조			C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2009-02-27 조례 제 3712호
(일부개정) 2012-10-11 조례 제 4101호

1조(목적)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0. 11>

1. “중증장애인”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 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개정 2012. 10. 11>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2014 대자연 한일세미나

8. 기능훈련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10. 탈시설 자립지원 <신설 2012. 10. 11>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중전 제5조제10호를 제5조제11호로 이동 2012. 10. 11>

5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5조 각 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11 조례 제4101호]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 02. 27 조례 제3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4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 현황과 과제

[인 쇄 일] 2014년 11월

[발 행 일] 2014년 11월

[발 행 처] 유성장애태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 작] 유성장애태인자립생활센터

[문의전화] 유성장애태인자립생활센터 042)826-0030

[F A X] 유성장애태인자립생활센터 042)826-0223

본 책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으로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